

전문대학학위심화과정 설치 기준(제58조의2제1항 관련)

기준	항 목	확보율
대학 전체	전임교원 확보율	50
	교사 확보율	100
모집 단위	전임교원 확보율	50
	교원 확보율(전임·겸임·초빙교원 포함)	80

비고

1. 교사 확보율 및 교원 확보율은 각각 「대학설립·운영 규정」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산정한다.
2. 교원 확보율은 편제정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.
3. 교사 확보율은 개설 과정이 주간일 경우 주간 과정, 야간일 경우에는 야간 과정의 편제정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.